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관련조항】 법 제30조(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등)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에 있어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 바,
  - 1) 농촌지도소 신축공사에 있어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를 각각 단독 발주하였는데 이중 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임. 그런데 건축, 전기, 통신(공사금액 2천만원), 소방(1천만원) 공사의 각 도급액을 합산하면 4천만원 이상인데 이럴 때에 통신 및 소방공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3항의 내용 중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에서 “동일한 건설공사”란?



- 귀문 1)에 대하여  
표준안전관리비는 노동부 고시 제91-57호

(’91. 9. 27)제3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므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액을 합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3항)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각각의 도급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농촌지도소 신축공사의 총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이므로 통신공사(2천만원), 소방공사(1천만원)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귀문 2)에 대하여  
“동일한 건설공사”라 함은 일정한 건설공사장에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축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총칭함  
(건안 68307-32, ’94. 3. 2)

**4천만원 미만 공사도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공사금액(재료비 포함)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계상 지급하고 있는 안전관리비는 관련 고시 제6조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원가계산서와 계약서의

총공사금액이 변동되거나 계약이행중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한 총공사금액이 변동되었을 때 안전관리비의 인정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질의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은 4천만원 이상으로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었으나 낙찰가 결정시 낮은 낙찰률로 계약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 되었을 때 이미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

<답설> 계약금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설

- 사유

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은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가계산액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비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견해

<을설> 계약금액에서 안전관리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설

- 사유

안전관리비의 원가계산시 계상토록 되어 있으므로 저가낙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동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

질의 2) 기 이행중인 계약에서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감하게 될 때 그 시점(설계변경 승인일 또는 물가변동 기준일, 이하 같음) 이후의 안전관리비를 계상 또는 제외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다만, 설계변경으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는 그 때부터 계상토록 되어 있음. 관련 "나"호 참조)

<답설>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이행분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계상 또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설

- 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 또는 미만 여부에 따라 동비용을 계상 또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

<을설>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이행분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계상 또는 제외조정이 필요없다는 설

- 사유

기 이행중인 계약이 특별한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총액, 확정 계약으로 체결되었을 시 동비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없다는 견해

A

○ 질의 1)에 대하여,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노동부고시 제91-57호(1991. 9. 27)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므로 4천만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는 그 계상을 제외할 수 없을 것이며

○ 질의 2)에 대하여,  
건설공사가 그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동 계약금액의 증감시는 그 사유발생시를 기준으로 그 계약액을 증감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안 32169-2, '93. 1. 14)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공사도 표준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인지**

Q

○ 노동부고시 제91-57호 제3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조항 및 제6조제2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한 건설공사까지 포함됨을 말하는 것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노동부고시 제91-57호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일괄적용 포함)에만 적용되며,
- 동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가입(임의가입)한 건설공사는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됨  
(건안 32169-26, '93. 2. 19)

**예정가격 작성 일시와 계약체결 일시가 다른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고시”를 적용하는지**

**Q**

- '94. 10. 24자로 개정고시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관련 고시의 개정으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의 세분화 및 요율변경이 있었으나 그 계상시기와 관련하여 동고시 부칙 제2조의(경과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과의 차이가 있어 적용상 혼란이 초래되는 실정임
- 질의내용(공종, 대상액, 요율은 예시임) 대상액 5억원 미만 전기통신공사로서 이 개정고

시의 시행일 이전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다가 동고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할 경우 종전고시에 의한 요율(2.48%)과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1.24%)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설〉 종전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  
- 사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금액(낙찰금액)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에 계약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을설〉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  
- 사유

종전고시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행기간중 실제 소요되는 안전관리비는 개정고시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게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예 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방법으로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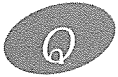
**A**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고시의 적용시점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임. 따라서 계약체결이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

여야 함

(건안 68307-300, '94. 11. 18)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삭감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 당사는 일반건설업종으로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 노동부고시 제91-57조('91. 9. 27)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공포 이전에도 사업소별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유자격자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1-3명을 임명 운영하여 왔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표준안전관리비와 관계없이 회사의 인건비에서 집행하였고 표준안전관리비의 40%를 인건비로 집행하여 오던중
  - 금번 '93년도 공사계약과정에서 발주자측은 공사계약내용에 표준안전관리비의 인건비 40%를 인정치 않겠다는 조항을 삽입하려고 하는 바,
- 공사계약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정한 안전관리자 인건비 40% 사용 불가 조항을 삽입하더라도 건설공사 계약법상 위배되지 않는지의 여부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이하 안전관리비라 함)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

는 반드시 그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하며,

- 수급인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안전관리비를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및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함은 물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한편 발주자는 이들의 안전관리비 사용 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고 공사 종료 후는 이에 대한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바,
- 귀사의 경우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 적용 건설공사 계약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제외된 안전관리비가 계상될 수는 없을 것이나,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발주자측에서 이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고, 그 잔액 발생경우 등에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산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안 32169-21, '93. 2. 12)

**해 설**

- '94. 10. 21 관련 "고시"가 개정되었으며, 동 고시에는 '94. 10.21 이후 발주된 공사는 안전관리비를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금액 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 95-6호, '95. 2. 23) 제9조 참조]

**구조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Q

○ 폐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신축공사의 시공부분만을 도급계약하여 시공중 발주처로부터 공인 안전기관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구조안전진단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도급내역 중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도급내역서에 계약된 안전관리 비중에 구조안전진단비가 포함되는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바람

- 아 래 -

<답설>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노동부고시 제91-31호(1991. 7. 4)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에(이하 "고시"라 한다)예시된 사업장의 안전점검 사항에 구조안전진단 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구조안전진단 비용도 당연히 도급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은 당초 설계시 판단할 사항이며, 그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제반 검토사항이 건축법 제38조 내지 제44조 규정에 의거 확인될 사항으로 기 건축허

가된 건축물의 시공 부분만을 도급받아 시공중에 구조안전진단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별도비용으로 행하여야 타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 시공중 발생하는 안전보건조치, 예방 및 이행등에 필요한 비용이고 노동부고시 별표 2-1-1다에 기록된 안전점검은 기본비용에 예시된 것으로 이 기본비용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공통으로 산정해야 하는 안전관리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구조안전진단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도급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에는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계상되지 않은 것을 봐야 한다는 설

A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은 설 계상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 32169-586, '92. 11. 5)

눈길마다 안전확인  
손길마다 안전점검